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43 - 15127호

시행일자 2024. 2. 27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초·중학교 입학생의 추가접종을 제고를 위한 미접종자 접종 독려 협조 요청  
(질병관리청)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-893(2024.2.23.)

3. 질병관리청과 교육부에서는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초·중학교 입학생 대상으로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「초·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」을 추진하고 있으며,

4.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미접종 필수예방접종을 확인하는 경우, 보호자에게 예방접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하고 접종을 권고할 수 있도록 본 사업 취지 등을 안내하여 주시기를 다음과 같이 우리협회로 요청해온 바,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음 -

○ 2024년도 초·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

학교	사업대상	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
초등학교	2017.1.1.~12.31 출생자 및 의무 취학 예정자	<b>4~6세 예방접종 4종</b> ※ DTaP 5차, IPV 4차, MMR 2차,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(약독화 생백신 2차)
중학교	2011.1.~12.31. 출생자 및 입학 예정자	<b>11~12세 예방접종 3종</b> ※ Tdap(Td) 6차, 일본뇌염불활성화백신5차(약독화생백신2차), HPV 1차(여학생)

※ 2011년생은 2024년까지 국가지원 대상이나, HPV는 17세까지 접종 가능 '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' 참고

○ 협조요청

- (과거 접종력 확인) 지연된 접종은 불필요한 접종(생략 등)이 발생하지 않도록, 예방접종 전 과거 접종력 확인 필요

※ 지연된 접종은 「2024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(의료기관용) p212~213, 215~216」 참조하여 따라잡기 일정에 맞춰 접종 완료

- (접종 등록) 전산등록이 누락된 필수예방접종이 확인 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요청

- (예방접종 금기 사유 등록)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한 경우,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금기 사유 전산 등록 요청

※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→ 등록업무 → 예방접종등록 → 우측상단[바로가기] → '접종 금기자 등록'

※ 예방접종 금기 사유

- ①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 심함 알레르기 반응(아나필락시스)이 발생했던 경우
- ② 백일해 또는 백일해 포함 백신 접종 후 7일 이내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
- ※ 고열, 면역글로불린 투여 등의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, 아토피 등은 금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

※ 붙임 : 질병관리청 공문 1부. 끝.

대한 의 사 협 회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),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, 대한공중보건이사협의회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